

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

제 호

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8조의5(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)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합니다.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년 월 일

(담당자: )

(연락처: )

160mm×60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